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- 27호

『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
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

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(조례안예고)에 의
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6월 2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사유

- 가. 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
- 나. 자연재난·인적재난·사회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 부서와 북부권역의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사업소를 신설하며,
- 다.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,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재난·안전 정책의 총괄·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6조 및 제8조)

- 나. 계양공원 등 북부권역(계양구, 서구, 강화군)의 도시공원 조성·관리를 위하여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고, 그에 따라 동부권역을 정비하며, 녹지관리사업소를 폐지함.(안 제56조, 제13절의2 및 제23절)
- 다.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(8개→5개)하고 명칭, 관할구역을 조정함.(안 별표 2)
- 라.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을 2013년 8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.(조례 제4030호 부칙 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: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2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자치행정국”을 “안전행정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자치행정국)”을 “(안전행정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재난·안전 정책의 총괄·조정에 관한 사항

제56조제1항 중 “(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)”를 “(남동구, 부평구)”로 한다.

제4장제13절의2(제59조의2 및 제59조의3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절의2 북부공원사업소

제59조의2(설치) ① 북부권역(계양구, 서구, 강화군)의 쾌적한 도시생활의 확보와 정서순화를 위한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의 조성·관

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공원사업소(이하 이 절에서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둔다.

제59조의3(업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
2.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보수
3.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
4.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
5.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(다만,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)
6.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
7. 시장이 정하는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녹지대의 조성·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8. 각종 수목·화훼·잔디의 수급계획, 재배, 양묘 및 증식연구
9. 그 밖에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장제23절(제78조 및 제79조)을 삭제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조례 제40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“2013년 8월 31일”을 “201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
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자치행정국”을 “안전행정국”으로 한다.

⑧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⑨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8조제4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⑩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⑪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⑬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[별표 2]

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·위치·관할구역(제35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	인천광역시 일원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	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	인천광역시 일원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	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	인천광역시 일원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	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	인천광역시 일원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	인천광역시 일원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	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	인천광역시 일원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	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39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(향후, 현 남부수도사업소 청사 또는 도화동 신청사에 통합청사 추진)	중구, 동구, 남구 일원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	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1 (향후, 연수구·남동구 경계 또는 수산 또는 남동정수장내 통합청사 신축 추진)	연수구, 남동구, 용진군 일원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	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(향후, 부평구·계양구 경계 또는 부평정수장내 통합청사 신축 추진)	부평구, 계양구 일원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1번길 26	서구 일원
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	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마니산로 9	강화군 일원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 (실·국·본부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경제수도추진본부, <u>자치행정국</u> , 보건복지국, 여성가족국, 건설교통국, 문화관광체육국, 도시계획국, 환경녹지국, 항만공항해양국,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.	제6조 (실·국·본부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<u>안전행정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8조 (<u>자치행정국</u>) <u>자치행정국장</u>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4. (생략) <u><신 설></u> 15. (생략)	제8조 (<u>안전행정국</u>) <u>안전행정국장</u> ----- 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<u>재난·안전 정책의 총괄·조정</u> 에 관한 사항 16. (현행 제15호와 같음)
제56조 (설치) ① <u>동부권역(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)의 쾌적한 도시생활의 확보와 정서순화를 위한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의 조성·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(이하 이절에서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56조 (설치) ① -----(<u>남동구, 부평구</u>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13절의2 북부공원사업소</u> 제59조의2(설치) ① <u>북부권역(계양구, 서구, 강화군)의 쾌적한 도시생활의 확보와 정서순화를 위한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의 조성·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공원사업소(이하 이 절에서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둔다.

현행	개정안
<u>제23절 녹지관리사업소</u> <u>제78조 (설치) ①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녹지대의 조성·유지·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녹지관리사업소 (이하 이절에서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 <u>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에 둔다.</u> <u>제79조 (업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 <u>1. 각종 수목·화훼·잔디의 수급계획, 재배, 양묘 및 증식연구</u> <u>2. 시장이 정하는 녹화사업의 시행</u> <u>3. 시장이 정하는 녹지대 관리 및 병충해 방제</u> <u>4. 녹화사업에 따르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, 재산관리</u> <u>5. 시장이 정하는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및 화단조성</u>	<u>제59조의3(업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 <u>1.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</u> <u>2.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보수</u> <u>3.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</u> <u>4.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</u> <u>5.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(다만,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)</u> <u>6.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</u> <u>7. 시장이 정하는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녹지대의 조성·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8. 각종 수목·화훼·잔디의 수급계획, 재배, 양묘 및 증식연구</u> <u>9. 그 밖에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<삭 제></u>

현행	개정안
부칙<2007-07-30 조례 제4030호> ① (생략) ②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은 <u>2013년 8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 ③ (생략)	부칙<2007-07-30 조례 제4030호> ① (현행과 같음) ②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14년 12월 31일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검토와 발제사항

관계 법령	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(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·독자성·계속성 2.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.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. 주민편의,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. 통솔범위,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. 사무의 위탁가능성 제9조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